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246 |
|----------|---------|

제안년월일 : 2022년 6월 1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립체육시설 중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전용 사용료가 원가산정 결과 적용의 착오로 과다인상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수정함(안 [별표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의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란 중 “89,000~115,700(1면, 2시간)”을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중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시설 | | 체육 경기 | 체육 행사 |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
|---------|----------|--------------------------------|-------|-------------|
| 목 동 운동장 | 다목적 구장 | <u>44,000~57,200(1면, 2시간)</u> | | |
| | | <u>89,000~115,700(2면, 2시간)</u> | | |
| 비고 | 9. <삭 제> | |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수 정 안 | | | | | |
|--------------|-------|--|-------|--------------|-------|-------------|-------|--------------|--------|------------------------------|-------|--------------|--|
| [별표 3] 전용사용료 | | | | [별표 3] 전용사용료 | | | | [별표 3] 전용사용료 | | | | | |
| 시설 | | 체육 경기 | 체육 행사 | 시설 | | 체육 경기 | 체육 행사 | 시설 | | 체육 경기 | 체육 행사 | 공연문화 예술 일반행사 | |
| 목 동 운동장 | 다목적구장 | <u>89,000~115,700(1면,2시간)</u> | | 목 동 운동장 | 다목적구장 | (현행과 같음) | | 목 동 운동장 | 다목적 구장 | <u>44,000~57,200(1면,2시간)</u> | | | |
| 비고 | |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u>40,000~52,000원으로 한다.</u> | | 비고 | | 9. (현행과 같음) | | 비고 | | <u><삭 제></u> | |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용허가)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중 “받아야 한다.” 를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뚝섬승마훈련원 (삭제)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 <p>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u>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u>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
| <p>제5조(사용허가) ① ~ 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 <p>제5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u>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u>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u></p> <p style="padding-left: 2em;"><u>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u> <u>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u>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뚝섬승마훈련원

5. ~ 11. (생략)

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

-----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 명칭 | 시설명 | 기능 | 위치 |
|-----------------|------------------------|-------------------------|--------------------------------------|
| 잠실종합운동장 | 올림픽주경기장 |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
| |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 |
| | 실내체육관 |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 |
| |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 농구, 배구 | |
| | 제1수영장 | 수영 | |
| | 제2수영장 | 수영 | |
| | 체조관 | 생활체육교실 운영 | |
| | 야구장 | 야구 | |
| | 인라인하키장 |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 |
| 서울월드컵경기장 | 풋살구장 | 풋살, 각종행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
| | 주경기장 | 축구, 각종행사 | |
| | 보조경기장 | 축구, 각종행사 | |
| | 풋살구장 | 풋살, 각종행사 | |
| | 다목적구장 | 축구, 각종행사 | |
| | 워밍업실 | 축구, 각종행사 | |
| 2002FIFA 월드컵기념관 |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 | |
| 서남권돔구장 | 야구장 | 야구, 각종행사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
| | 수영장 | 수영 | |
| | 축구장 | 축구 | |
| | 체력단련장 | 체력단련 | |
| | 풋살구장 | 풋살, 각종행사 | |
| | 보행광장 | 각종행사 | |
| 목동운동장 | 주경기장 | 육상, 축구, 각종행사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
| | 야구장 | 야구 | |
| | 실내빙상장 |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 |
| | 다목적구장 |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 |
| 효창운동장 | 축구장 |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
| 장충체육관 | 주체육관 |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
| | 보조체육관 |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 |
| | 다목적실1 |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 |
| | 다목적실2 |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 |
| 구의야구공원 | 간이야구장 | 야구 | 서울시 광진구 위커히로 57-30(구의동 164-5) |
| 신월야구공원 | 간이야구장 | 야구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
| 창동문화체육센터 | 수영장 | 수영, 각종경기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
| | 체력단련장 | 체력단련 | |
| | 실내체육관 |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 |
| 산악문화체육센터 | 클라이밍장 | 클라이밍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 시 설 | | 금 액 | |
|-------------|--|-------------|------------------|
|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실내체육관 | 4,000~8,000 | |
| 야구장 |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돐구장 | 4,000~8,000 | |
| 축구장 |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돐구장 | 4,000~8,000 | |
| 풋살구장 |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돐구장 풋살구장 | 4,000~8,000 | |
| 육상장(트랙) |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 1,000~2,000 | |
| 체력단련장 |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돐구장 체력단련장 | 4,000~8,000 | |
| 실내골프연습장 |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 성인 | 4,000~8,000 |
| | | 청소년 | 3,000~6,000 |
| | 스크린 골프연습장 | 9홀 | 7,000~14,000 |
| | | 18홀 | 14,000~28,000 |
| 체육공원 | 파크골프장 | 성인 | 4,000~8,000 |
| | | 청소년 | 3,000~6,000 |
| | | 어린이 | 2,000~4,000 |
| 체조관 | 잠실체조관 | 3,000~6,000 | |
| 수영장 |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 성인 | 4,000~8,000 |
| | | 청소년 | 3,000~6,000 |
| | | 어린이 | 2,000~4,000 |
| |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돐구장 수영장 | 성인 | 3,500~7,000(1시간) |
| | | 청소년 | 2,000~4,000(“) |
| | | 어린이 | 1,500~3,000(“) |
| 빙상장 | 목동실내빙상장 | 성인 | 4,000~8,000 |
| | | 청소년 | 3,500~7,000 |
| | | 어린이 | 3,000~6,000 |
| 클라이밍장 | 산악문화체육센터 | 성인 | 3,000~6,000 |
| | | 청소년 | 2,000~4,000 |
| | | 어린이 | 1,500~3,000 |
| 비 고 |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 | |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 시 설 | 대 상 | 수 강 료 | | | | | |
|---------------|--|-------------------|-------------------|-------------------|-------------------|-------------------|--------------------|
| |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 제1·2수영장 | 성 인 | 14,000 ~21,000 | 28,000 ~42,000 | 42,000 ~63,000 | 56,000 ~84,000 | 63,000 ~94,500 | 68,600 ~102,900 |
| | 청소년 | 8,000 ~12,000 | 16,000 ~24,000 | 24,000 ~36,000 | 32,000 ~48,000 | 36,000 ~54,000 | 39,200 ~58,800 |
| | 어린이 | 6,000 ~9,000 | 12,000 ~18,000 | 18,000 ~27,000 | 24,000 ~36,000 | 27,000 ~40,500 | 29,400 ~44,100 |
| 체력단련장 | 44,000~66,000 | | | | | | |
| 골프연습장 | 성 인 | 40,000~60,000 | | | | | |
| | 청소년 | 30,000~50,000 | | | | | |
| 올림픽주경기장 및 체조관 | 성 인 | 7,500 ~11,200 | 15,000 ~22,500 | 22,500 ~33,700 | 30,000 ~45,000 | 33,700 ~50,500 | 36,700 ~55,000 |
| | 청소년 | 5,600 ~8,400 | 11,200 ~16,800 | 16,800 ~25,200 | 22,400 ~33,600 | 25,200 ~37,800 | 27,400 ~41,100 |
| | 어린이 | 4,700 ~7,000 | 9,400 ~14,100 | 14,100 ~21,100 | 18,800 ~28,200 | 21,100 ~31,600 | 22,900 ~34,300 |
| 비 고 |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 | | | | | |

나. 서남권 돝구장

(단위 : 원)

| 시설 | 대상 | 수강료 | | | | | |
|-------|--|-------------------|-------------------|-------------------|-------------------|-------------------|--------------------|
| |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 수영장 | 성인 | 14,000 ~21,000 | 28,000 ~42,000 | 42,000 ~63,000 | 56,000 ~84,000 | 63,000 ~94,500 | 68,600 ~102,900 |
| | 청소년 | 8,000 ~12,000 | 16,000 ~24,000 | 24,000 ~36,000 | 32,000 ~48,000 | 36,000 ~54,000 | 39,200 ~58,800 |
| | 어린이 | 6,000 ~9,000 | 12,000 ~18,000 | 18,000 ~27,000 | 24,000 ~36,000 | 27,000 ~40,500 | 29,400 ~44,100 |
| 체력단련장 | 44,000~66,000 | | | | | | |
| 비고 |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 | | | | |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 구 분 | 수 강 료 | 비 고 |
|-------------------|-------------------|----------------|
| 성 인 반(주 3회) | 73,000 ~ 109,500 | 1일 1시간, 1개월 기준 |
| 초·중·고반(주 2회) | 73,000 ~ 109,500 | |
| 초·중·고반(주 3회) | 88,000 ~ 132,000 | |
| 초·중·고반(주 5회) | 140,000 ~ 210,000 | |
|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 73,000 ~ 109,500 | |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 시 설 | 대 상 | 수 강 료 | | | | | |
|-------|--|--------------------|--------------------|--------------------|--------------------|---------------------|---------------------|
| |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 수영장 | 성 인 | 15,400 ~ 23,100 | 30,800 ~ 46,200 | 46,200 ~ 69,300 | 61,600 ~ 92,400 | 69,300 ~ 103,900 | 75,400 ~ 113,100 |
| | 청소년 | 8,800 ~ 13,200 | 17,600 ~ 26,400 | 26,400 ~ 39,600 | 35,200 ~ 52,800 | 39,600 ~ 59,400 | 43,100 ~ 64,600 |
| | 어린이 | 8,200 ~ 12,300 | 16,400 ~ 24,600 | 24,600 ~ 36,900 | 32,800 ~ 49,200 | 36,900 ~ 55,300 | 40,100 ~ 60,100 |
| 체력단련장 | | 44,000 ~ 66,000 | | | | | |
| 비 고 |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 | | | | | |

마. 장충체육관

| 시 설 | 수강료 |
|-------|---|
| 다목적실 | 100,000(상한액) |
| 체력단련장 | 44,000~66,000 |
| 비 고 |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원)

| 시 설 | 대 상 | 수강료 | 비 고 |
|-------|-----|---------------|-------------------|
| 클라이밍장 | 성인 | 36,000~72,000 | 월8회, 1일 1시간 기준 |
| | 청소년 | 32,000~64,000 | |
| | 어린이 | 30,000~60,000 | |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 시 설 | 종 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 고 |
|-----|---------------------|-----------|------------------|-----------|
| 공통 |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 1인 1회당 | 1,000 ~20,000 | 재료비 포함 |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 시 설 | | 체 육 경 기 | 체 육 행 사 |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기타 사용 | |
|------------------|--------------------------------|--|--------------------------|--------------------------|---------------------|--------------------------|
| 잠실 종합 운동장 | 실내체육관 | | 121,000~157,300 | 181,000~235,300 | 423,000~549,900 | |
| |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 | 73,000~94,900 | 110,000~143,000 | 244,000~317,200 | |
| | 제1·2 수영장 | 09:00~18:00 | 804,000~1,045,200 | 1,206,000~1,567,800 | 1,548,000~2,012,400 | |
| | | 09:00~12:00 | 268,000~348,400 | 402,000~522,600 | 516,000~670,800 | |
| | | 12:00~18:00 | 680,000~884,000 | 1,020,000~1,326,000 | 1,341,000~1,743,300 | |
| | 야구장 | | 221,000~287,300 | 331,000~430,300 | 530,000~689,000 | |
| | 올림픽주경기장 | | 516,000~670,800 | 774,000~1,006,200 | 1,252,000~1,627,600 | |
| |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 | 148,000~192,400 | 222,000~288,600 | 355,000~461,500 | |
| | 체조관 | | 41,000~53,300 | 62,000~80,600 | 138,000~179,400 | |
| | 인라인하키장(1시간) | | 45,000~58,500 | | | |
| 풋살구장(2시간) | | 32,000~41,600 | | | | |
| 서울 월드컵 경기장 | 주경기장 | | 571,000~742,300 | 857,000~1,114,100 | 1,267,000~1,647,100 | |
| | 보조경기장 | 1일 | 232,000~301,600 | 350,000~455,000 | 560,000~728,000 | |
| | | 2시간 | 93,000~120,900 | 140,000~182,000 | 224,000~291,200 | |
| | 풋살구장(1면, 2시간) | | 32,000~41,600 | 48,000~62,400 | 64,000~83,200 | |
| | 다목적구장(2시간) | | 63,000~81,900 | | | |
| | 위빙업실(1면, 2시간) | | 57,000~74,100 | | | |
| | 회의실(4시간) | | 388,000~504,400 | | | |
| | 연회장 (") | | 715,000~929,500 | | | |
| | VIP룸(") | | 1,050,300~1,365,300 | | | |
| | 가변무대 | | 749,000~973,700 | | | |
| | 3층데크,광장(4시간, m ² 당) | | 210~270 | | | |
| | 회원실식당(4시간) | | 630,200~819,200 | | | |
| | 회원실 (4시간) | A1 |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 87,600~113,800 | |
| A2 | | 77,800~101,100 | | | | |
| A3 | | 63,400~82,400 | | | | |
| A4 | | 61,800~80,300 | | | | |
| A5 | | 45,600~59,200 | | | | |
| 서남권 돔구장 | 야구장 | | 224,000~291,200 | 336,000~436,800 | 538,000~699,400 | |
| | 축구장 | 1일 | 155,000~201,500 | 232,000~301,600 | 372,000~483,600 | |
| | | 2시간 | 51,000~66,300 | 77,000~100,100 | 170,000~221,000 | |
| | 수영장 | 09:00~18:00 | 489,000~635,700 | 735,000~955,500 | 942,000~1,224,600 | |
| | | 09:00~12:00 | 163,000~211,900 | 245,000~318,500 | 314,000~408,200 | |
| | | 12:00~18:00 | 413,000~536,900 | 621,000~807,300 | 816,000~1,060,800 | |
| | 보행광장(4시간, m ² 당) | | 200~260 | | | |
| 풋살구장(1면, 2시간) | | 32,000~41,600 | 48,000~62,400 | 64,000~83,200 | | |
| 불펜(2시간) | |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 | | | |
| 목동 운동장 | 주경기장 | 1일 | 170,000~221,000 | 256,000~332,800 | 409,000~531,700 | |
| | | 2시간 | 68,000~88,400 | 102,000~132,600 | 163,000~211,900 | |
| | 야구장 | 1일 | 111,000~144,300 | 167,000~217,100 | 466,000~605,800 | |
| | | 3시간 | 66,000~85,800 | 100,000~130,000 | | |
| | 실내빙상장 | | 102,000~132,600 (1시간) | 153,000~198,900 (1시간) | 7,331,000~9,530,300 | 110,000~143,000 (1시간) |

| | | | | | |
|----------|--|---|-----------------|-----------------|--|
| | 다목적구장 |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 | | |
| 효창운동장 | 1일 | 125,000~162,500 | 187,000~243,100 | 300,000~390,000 | |
| | 2시간 | 50,000~65,000 | 74,000~96,200 | | |
| 장충체육관 | 체육관 | 129,000~167,700 | 193,000~250,900 | 451,000~586,300 | |
| | 보조체육관(3시간) | 25,800~33,500 | 60,000~78,000 | 79,800~103,700 | |
| | 다목적실(3시간) | 12,000~15,600 | 31,200~40,600 | 37,200~48,400 | |
| 구의야구공원 | 1일 | 99,000~128,700 | 149,000~193,700 | 285,000~370,500 | |
| | 3시간 | 59,000~76,700 | 89,000~115,700 | | |
| 신월야구공원 | 1일 | 99,000~128,700 | 149,000~193,700 | 285,000~370,500 | |
| | 3시간 | 59,000~76,700 | 89,000~115,700 | | |
| 창동문화체육센터 | 실내체육관(3시간) | 173,000~224,900 | | | |
| 산악문화체험센터 | 기획전시실 | 158,000~205,400 | | | |
| | 다목적실 | 352,000~457,600 | | | |
| | 시청각실 | 232,000~301,600 | | | |
| |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 25,000~32,500 | | | |
| 비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 | | | |